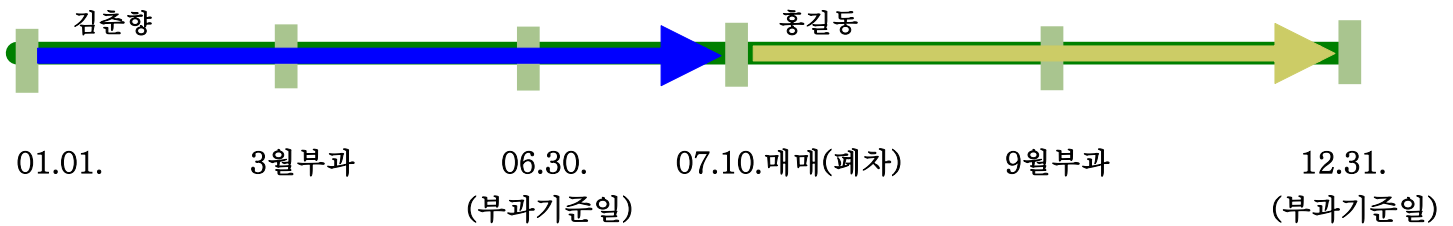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는 이렇게 ♥

《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이므로 차를 이전 및 폐차하더라도 1회~2회 더 부과됨

예시) 김춘향이 자동차를 2012.07.10일에 홍길동에게 매매하거나 차를 폐차(말소)한 경우



※ 9월 정기분 부과기간 : 당해연도 01.01. ~ 06.30.(181일)

익년 3월 정기분 부과기간 : 전년도 07.01. ~ 12.31.(184일)

● 2012.01.01. ~ 06.30일, 07.01. ~ 07.09일까지 소유(운행)는 김춘향이며
2012.07.10일부터 소유(운행)는 홍길동이므로
 부과 기준일로 각각 계산되어 김춘향과 홍길동에게 부과

→ ★ 김춘향 총 2회부과 ★

- 2012.01.01. ~ 06.30일은 2012년 9월 정기분 : 김춘향에게 부과
- 2012.07.01. ~ 07.09일은 2013년 3월 정기분 : 김춘향에게 부과

★ 홍길동 익년 3월부터 부과 ★

- 2012.07.10. ~ 12.31일은 2013년 3월 정기분 : 홍길동에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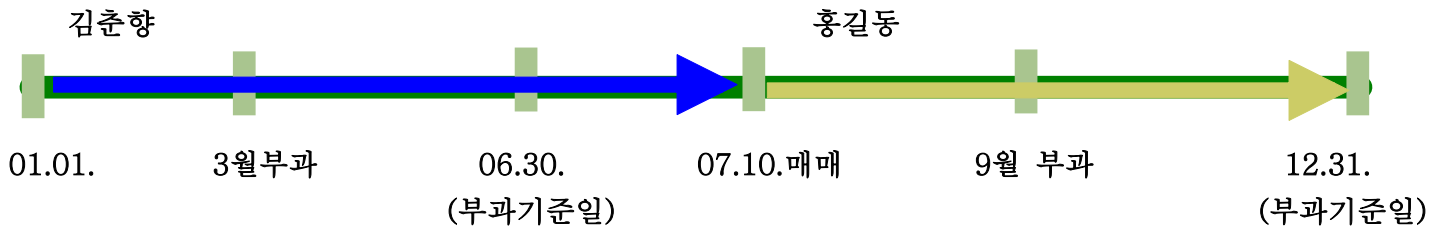
★ 《자동차 관련 자주하는 문의사항 BEST 1위》

Q) 당시 차량의 체납금을 다 완납하고 차량을 이전(폐차)했는데 왜 뒤늦게 부과가 됐나요?

A)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4조(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제9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등)에 의거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후불제 성격으로 당해 1월에서 6월 사용분이 그해 9월에 부과되며 당해 7월에서 12월 사용분이 다음해 3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매매(폐차)당시 체납금은 존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매매(폐차)가 가능하였으며 차량의 소유 및 운행한 시점까지 계산되어 1회~2회 더 부과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

예시) 김춘향이 시설물을 2012.07.10일에 홍길동에게 매매한 경우



※ 9월 정기분 부과기간 : 당해연도 01.01. ~ 06.30.(181일)

익년 3월 정기분 부과기간 : 전년도 07.01. ~ 12.31.(184일)

- 2012.01.01. ~ 06.30일, 07.01. ~ 07.09일까지 소유는 김춘향이며
2012.07.10일부터 소유는 홍길동이므로
부과 기준일로 각각 계산되어 김춘향과 홍길동에게 부과

→ ★ 김춘향 총 2회부과 ★

- 2012.01.01. ~ 06.30일은 2012년 9월 정기분 : 김춘향에게 부과
- 2012.07.01. ~ 07.09일은 2013년 3월 정기분 : 김춘향에게 부과

★ 홍길동 익년 3월부터 부과 ★

- 2012.07.10. ~ 12.31일은 2013년 3월 정기분 : 홍길동에게 부과

★ 《시설물 관련 자주하는 문의사항 BEST 1위》

Q) 환경개선부담금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들이 부담을 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의거 부과기준일(06.30, 12.31.)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자이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참고로 본 법령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점유자에게 관리비로 구상토록 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